

# 2025년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인천항만공사는 협력기업의 제조현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5년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4월 24일  
인천항만공사 사장

##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을 통한 협력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제조혁신

### □ 사업개요

- (지원내용) 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된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지원
  -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 (지원유형)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고도화)
  - 정부·인천항만공사와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용을 분담하여 지원함

지원유형	지원조건	사업비 분담 비율
고도화	중간1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정부30%,
고도화(동일수준)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 중간1→중간1 중간2→중간2	인천항만공사 30%, 중소기업 40%

\* 중간1 :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 및 분석 / 중간2 : 생산공정 실시간 제어

○ (지원자격) 국내 중소기업 (제조업)

< 지원제외 대상 하단내용 참고 >

▶ 과제 신청일 기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정부일반형, 대중소상생형 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부터 협약서상 구축 완료일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업
* 단, 최종점검 등에서 실패판정이 나오는 경우 고도화 과제 진행 중지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휴·폐업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
▶ 기타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정한 부적격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규모) 국내 중소기업 2개사 (제조업)

○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48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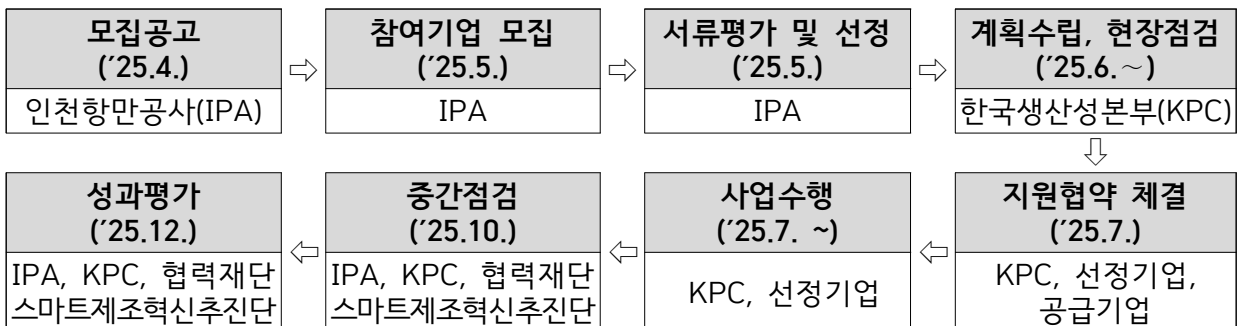
지원유형		정부	인천항만공사	중소기업	합 계
고도화	분담금액	24백만원	24백만원	32백만원	80백만원
	분담 비율	30%	30%	40%	100%

- 정부지원금 24백만원과 인천항만공사 지원금 24백만원의 합산금액
- 선정기업은 32백만원의 자부담금이 발생하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기간) 2025. 5. ~ 12. \* 사업진행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2. 추진절차 및 선정**

□ 추진절차



□ 선정방법

- (평가방식) 내·외부 심사위원을 통한 서면평가 진행
- (평가항목) 정성, 정량평가 및 가점으로 구성

<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선정평가 기준 >

구분		평가항목
1	정성평가 (60%)	사업 이해도 및 구체성, 업체의 경쟁력 및 수행역량 예산·기간 내 달성가능성 및 기대효과
2	정량평가 (40%)	인천항 이용실적, 지역기업 여부
3	가점	창업기업, 고용창출 기업, ESG인증기업 등

**3.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신청·접수) 2025. 4. 28.(월) ~ 2025. 5. 13.(화)까지
- (평가·선정) 2025. 5월 중

□ 접수방법 : 아래 제출서류를 이메일 제출(win-win@icpa.or.kr)

- (제출서류) 구비서류 발급방법을 참고하여, 아래 서류 제출

구분	제출서류 목록
1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참여신청서 (붙임 1)
2	사업계획서 (붙임 2)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3)
4	중소기업확인서 1부 (공고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확인 필수)
5	사업자등록증 1부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최근 1개년 고용 창출 실적 파악)
7	인천항 이용 수출입 실적증명 (2023 ~ 현재) * 인천항 이용실적 보유 시
8	인천항 이용 임대계약서 * 인천항 이용실적 보유 시
9	ESG 우수기업 인증서 * 해당실적 보유 시

#### 4. 구비서류 발급방법

구비서류 발급방법 참고사항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벤처기업부 발행 “중소기업확인서” 첨부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가능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의 소재지 및 사업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발급한 서류로, 최근 1개년 고용인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인천항 이용 수출입 실적증명	▶ 인천항을 이용한 수출입실적증명서 또는 기업의 인천항 이용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수출입확인서(수출입통관증명서 등)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정보포털(www.bandtrass.or.kr)을 통해 증명서 발급 가능하며 수출입실적 조회 시, 구분을 “인천항”으로 설정 - 전체 공항만을 대상으로 수출입실적 조회 시, 미인정

#### 5. 유의사항

- 선정통보를 받은 기업이 해당 기업의 사유로 중도 포기할 경우, 향후 3년간 인천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선정기업은 스마트공장 구축과제와 관련하여 성과공유제를 체결하고, 기술보호 지원사업(기술임치 등)에 참여해야 함
- 기재된 내용 및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선정취소·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동일한 내용의 타 정부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적발 시 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중복 수혜여부 확인해야 함
-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경우 참여기업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등 중소기업 입증이 가능한 기업만 가능함

- 선정기업은 아래의 ①사업관리 교육 및 ②스마트공장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해야 함

구분	세부 내용
① 사업관리 교육 (온라인)	- 대상 : 도입기업, 공급기업(대표, 실무자) - 내용 : 사업지침, 부실·부정구축행위 제재 사례, RCMS 사용법 등 * 협약 후 30일 이내 수료 완료, 별도 이수증 제출 없이 시스템에서 확인 - 교육기관 : 추후 별도 안내
②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	- 대상 : 도입기업 - 내용 : ① CEO·임원 대상 리더십 과정과 ② 재직자 대상 교육과정을 모두 의무 수료하고,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시 이수증 첨부 - 교육기관 :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원 등

- 동일수준은 수준향상 없이((예시) 중간1→중간1, 중간2→중간2) 재신청하는 경우를 의미함. 단, 목표수준을 초과 달성했던 기업(기초사업 완료 후 구축시스템 스마트화 수준이 중간1 이상으로 측정된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목표수준에 맞는 지원금 지원
-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은 기업당 중간1 이상 수준별로 1회만 가능('14년~'23년까지 모든 지원기업)하며, 지원유형은 동일수준 과제로 신청('20년 이후 지원기업의 달성수준부터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공장 사업 기구축 기업 수준(구축시스템 스마트화 수준) 확인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사이트 접속(<a href="http://www.smart-factory.kr">www.smart-factory.kr</a>) → 사업안내 → 도입기업 지원현황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최근년도 수준 적용)</li> </ul> </li> <li>○ 스마트공장 사업에 최초 신청하는 기업은 위 사이트 내 자가진단표 참조</li> </ul>
---

- 수준확인제도를 통해 수준 측정된 기업은 목표 수준에 따라 지원 유형 신청 가능함. 단, 기측정된 수준에서 동일수준 이상으로 목표수준((예시) 중간1 측정 시 고도화1로 지원 가능)을 설정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해 동일목표 수준으로 지원 가능
- 스마트공장 활용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도입기업에 구축된 솔루션의 로그기록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3년간 필수로

제출해야 함. 단, 시스템을 통한 로그기록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연 2회(6월·12월) 수기 등록 가능

- 선정 시 사업별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상 절차 및 의무를 준수하여 협약체결 및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단, 사업운영 상 필요시 주관기관 및 협업기관 협의를 통해 별도 운영 가능
- 본 사업 공급기업 선정의 책임은 참여 중소기업에게 있음
- 정부지원으로 구축된 스마트공장 시스템은 5년간 보유해야 하며, 해외이전 및 타 기업에 판매하는 것은 불가함

## 6. 문의처

기관명	전화번호	E-mail
인천항만공사 ESG경영실 (참여기업 모집관련 문의)	032-890-8082	win-win@icpa.or.kr
	032-890-8087	
한국생산성본부 (사업관리 관련 문의)	02-724-1191	shukang@kpc.or.kr



**【붙임 2】** (※ 최대 3page 이내로 작성)

2025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계획서

□ 추진계획

구 분	주요 문제점	
과거 스마트공장 구축 경력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과거 구축 수준 ( <input type="checkbox"/> 기초, <input type="checkbox"/> 중간1, <input type="checkbox"/> 중간2, <input type="checkbox"/> 고도)
지원희망 분야	<i>운영시스템구축 필요분야 필수 기재</i>	
문제점 및 애로사항		
개선방안 및 추진과제		
기대효과		

## 【붙임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인천항만공사는(이하 "기관"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지원사업 운영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필수정보	성명, 연락처(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제출서류 일체
	선택정보	없음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유기간은 사업종료 시까지이며, 보유기간 경과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필수정보에 대한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거부 시 해당 업무 진행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필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공받는 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생산성본부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사업수행, 지원금 교부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연락처(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제출서류 일체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유기간은 사업종료 시까지이며, 보유기간 경과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필수정보에 대한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거부 시 해당 업무 진행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귀하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해당 개인정보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 취급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함.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